

제 호

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서

1. 기 관 명:

2. 대 표 자:

3. 소 재 지:

위 기관을 「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보건복지부장관

직인